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적용 근거 신설〉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96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요약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6.
3. 회부연월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입주기업체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 근거 신설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1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1(사업)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45조의21(사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공단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다.</u>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과 산업기반시설의 관리,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해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음.

1)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²⁾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부는 동 시행령 제9조³⁾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⁴⁾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산업입지정책 수립, 산업집적 활성화,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과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산업단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연구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연구 및 자문
6.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연구 및 자문지원
7.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현황 조사 실시 사례

구 분	(분기별)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한국산업단지공단)	(분기별)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목적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동향을 분기별로 조사·분석 - 산업단지 기초통계 정보 제공 및 입주기업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전국 산업단지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정부의 효율적인 산업입지 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 잠재투자기업에게 입주수요 정보 제공																
조사대상	<table><tr><td>범위</td><td>산단공 관할 산단 내 입주기업 중 산업동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td></tr><tr><td>지역</td><td>전국</td></tr><tr><td>단 위 / 규모</td><td>사업체/표본사업체 4,500여개</td></tr><tr><td>적용분류</td><td>산업</td></tr></table>	범위	산단공 관할 산단 내 입주기업 중 산업동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	지역	전국	단 위 / 규모	사업체/표본사업체 4,500여개	적용분류	산업	<table><tr><td>범위</td><td>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내 사업체</td></tr><tr><td>지역</td><td>전국</td></tr><tr><td>단 위 / 규모</td><td>산업단지/1,330개 단지(2024.4분기 기준)</td></tr><tr><td>적용분류</td><td>산업</td></tr></table>	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내 사업체	지역	전국	단 위 / 규모	산업단지/1,330개 단지(2024.4분기 기준)	적용분류	산업
범위	산단공 관할 산단 내 입주기업 중 산업동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																	
지역	전국																	
단 위 / 규모	사업체/표본사업체 4,500여개																	
적용분류	산업																	
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내 사업체																	
지역	전국																	
단 위 / 규모	산업단지/1,330개 단지(2024.4분기 기준)																	
적용분류	산업																	
조사항목	- 업체수: 단지, 업종별 입주, 가동 입차 현황 - 생산활동: 단지, 업종별 산업생산 및 수출, 가동률 - 고용: 단지, 업종별 고용인원	- 단지 일반정보: 단지명, 단지유형, 위치 등 - 조성·분양: 지정면적, 관리면적, 분양면적 등 - 입주·고용: 입주·가동 기업수, 고용인원 - 생산·수출: 생산액, 수출액(당분기 실적 및 누계)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2024.12)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이와 같은 현황조사의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 현황과 업종별 산업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 현황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조사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고용인력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 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친화적인 산

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 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가 미비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제약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 고용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법상 산업단지의 입지조사에 대한 권한이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로써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유사한 행정조사가 중복하여 수행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성별, 연령 등 고용인력 현황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현행법 제6조의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직접 또는 의뢰하여 수행하는 입지조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개정안에 따라 수행하는 실태조사가 유사·중복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별도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참고로,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통계의 작성·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통계의 범위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개정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안, 제2213636호)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2.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적용 근거 신설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 제한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7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산업단지 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완화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⁴⁾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하되,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주요 입지요건

입지조건	규제대상
규제대상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①특정유해물질 배출 공장 ②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③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④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⑤그 외 어린이집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의 적용을 받게 됨. 특히, 입지조건으로서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 등과 어린이집 간 거리가 일정기준(50m) 이상 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입지요건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단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부 및 교육부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산업통상부는 문화선도산단 구현을 위한 산단 내 어린이집 설치 촉진 등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직장어린이집 시설의 주된 사용자가 7세 이하의 영유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유아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에서의 성장 등 환경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

교육부 또한 어린이집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영아를 함께 보육하는 시설로서 산업단지 소재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소음·공해 및 각종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내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명시된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게 되는 경우 특례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문언상 예측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대상 조항을 직접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요약

(출처: 산업통상부)

• 설치기준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입지요건	· 보육수요·위생·안전·교통·환경을 고려한 부지 선정 ·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 등 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 · 건축법상 설치 가능 용도
재산요건	· 가정, 민간어린이집 : 부채비율 50% 미만 · 협동어린이집 : 11명 이상 출자
규 모	· 전체정원은 300명 초과 불가 · 국공립 11명 이상, 직장 5명 이상, 민간 21명 이상, 가정 5~20명
구조 및 설비기준	· (건물) 1개 건물 내 설치 원칙 · (보육실) 원칙 지상 1층, 직장·산단·국공립 등은 예외적으로 1~5층 허용 · (면적) 시설전체 1인당 4.29㎡ 이상 / 보육실 1인당 2.64㎡ 이상 · (보육설비) 바닥난방, 채광·환기, 온·습도 유지, 교재·교구 구비 · (조리실) 위생적 조리설비 필수, 직장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 가능 · (목욕·화장실) 미끄럼 방지, 냉온수, 보육실 인접 · (교사실) 정원 21명 이상시 의무 · (놀이터) 정원 50명 이상은 옥외놀이터 원칙, 직장·밀집지역은 옥내, 인근 놀이터 허용, 1인당 3.5㎡ 면적 및 놀이기구 3종 이상 구비 · (급배수) 직결급수 원칙, 배수설비 필수 · (소방·피난) 층수별 차등규제 / 4~5층 스프링클러, 직통계단, 불연마감, 관리자 · (CCTV)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등 장소별 1대 이상 설치 / HD급 이상, 녹음 금지, 60일 이상 데이터 저장 · (장애아 전문) 시설 1인당 7.83㎡, 보육실 6.6㎡,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등 무장애 설계 · (통합어린이집) 장애아 3명 이상시 편의시설 노력의무